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24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임호선・임미애・권향엽
김승원・안도걸・이정문
이상식・허성무・이연희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역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장・축산관계시설・차량・사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채취 등 다양한 현장업무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수의인력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거래기록 열람・점검, 소독설비・방역시설 확인, 출입기록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축사 등의 소독 등 반복적 확인・점검 업무의 수행주체를 정비하되,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방역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범위와 현장 책임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그 밖에 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의 출입·검사 대상에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침습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료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을 포함하고, 살처분·사체처분 관련 책임체계와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대상을 정비하며, 시료채취 업무의 위탁대상,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7항·제8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6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제3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제2호, 제55조제2항, 제57조제6호, 제58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3호의13부터 제3호의15까지).

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 및 예찰을”을 “검사, 예찰 및 시료채취를”로 한다.

3. 도축장·집유장(集乳場)·사료제조시설 등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가축방역업무 수행 공무원의 시료채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이 아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제3항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료채취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가축의 신체에 채혈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료 중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확인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중 “가축방역관”을 “가축방역사”로 한다.

제1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공무원, 가축방역관”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공무원, 가축방역관”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6제2항 중 “가축방역관”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이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축,”을 “가축,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되며”를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 및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축방역관에게 지체”를 “지체”로, “살처분하게 하여야”를 “살처분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을 “가축방역관이 병성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가축방역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무원, 가축방역관”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2호 중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을 “가축의 살처분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현장을 지휘·감독한 사람”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축산관련단체”를 “축산관련단체 또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한다.

제57조제6호 중 “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를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58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가축방역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법률 제2150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제2항제3호의13 중 “예찰을”을 “예찰, 시료채취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14 및

제3호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14.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출입, 확인 또는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15.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시료채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50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축방역관) ① (생 략)	제7조(가축방역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축장·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	3. 도축장·집유장(集乳場)·사료제조시설 등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④ ----------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 예찰 및 시료채취를----------.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가축방역업무 수행 공무원의 시료채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이 아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제3항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료채취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가축의 신체에 채혈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료 중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확인 또는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가축방역사----------.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① ~ ⑥ (생 략)	제17조(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⑦ ----------공무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⑧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	⑧ ----------공무원-----

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생 략)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생 략)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소속 공무원----------.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이를 확인

	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승인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① --------- ---------- ---------- ----------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축,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 및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살처분 명령) ①·② (생략)	제20조(살처분 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체----------살처분하여야--------. -----가축방역관이 병성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생략)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② ----------시장·군수·구청장----------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생략)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3항 본문(제28조에	2.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가축의 살처분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현장을 지휘·감독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검사 업무 중 시료 채취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축산관련단체 또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
1. ~ 5의3. (생 략)	1. ~ 5의3. (현행과 같음)
6.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
<신 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가축방역관
<신 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법률 제2150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50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 ---------- ---------- ---------- ---------- ---------- ---------- -------.
1. ~ 3의12. (생 략)	1. ~ 3의12. (현행과 같음)
3의13. 제7조제4항(제8조제3항	3의13.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 ---------- ----------예찰, 시료채취를----------
<신 설>	3의14.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출입, 확인 또는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신 설>	3의15.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시료채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